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팩스) 02-741-5364 웹사이트 http://www.interpu.net/rights

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에 대한 조명이 한창이다.
4·3 50주년을 맞는 시점
해 보다른 취民间 논의와
되고 있다.

3에 대한 논의가 예고된
6월 학생 이후, 그전까지
기하는 것조차 '금기'였고,
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출된 민주화 열기는 4·3
을 분석하시겠고, 그 작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현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대한 진실은 아직 일부에
다수 양민들이 고령토벌
들에 의해 집단학살되었
는 3만 명 이상으로 추
4 다양한 피해 사례가
이다. 제주도의회가
에서도 1만1천6백60여
83%에 해당하는 토벌대에 의해
토벌대에 의해 사
다.

의 핵심쟁점인 마산
부는 여전히 폐일에
민과 하게 일부가 주
자료와 미국측 관
구해 왔지만, 경북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1998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02-741-5363 (팩스) 02-741-5364 웹사이트 http://www.interpu.net/rights

별장부터 나다

경재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기만'과 '배제'의 구조화, 김대중식 인권의 길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박래균(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경제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

1998년은 인권과 관련해 풍부한 논의와 상황이 연출된 해였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한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라는 시기적인 계기는 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편으로 IMF 구제금융과 거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은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가 '세계적인 인권수호자'(사실은 인권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권에 대해 발언해왔다.

인권은 그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제약받거나 유보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理性 권리이자 마땅히 인류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인권을 사상적·제도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8. 12. 10. 김대중 대통령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 중

위와 같은 적극적인 발언은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어져 분명 한국사회에서 인권 담론에 대해 지극히 소홀했던 지식인들과 심지어는 정부관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인권헌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인권헌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도 한때 학생인권선언을 추진하는 등 정부 부처들이 인권경쟁을 벌이기 조차 했다.

하지만, 인권지도자를 자처한 그가 1년 가까이 '통치'한 현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진정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정부의 정책에서 친정으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음을 인정할 만한 구석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그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를 인용해 보자.

그간 아시아의 일각에서는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인권과 이를 위한 민주주의가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용납지 않는 권위주의체제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이는 또한 경제발전의 명분아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우리의 역사가 웅변으로 입

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의 기본 철학이자 목표로 삼고 경제개혁을 비롯한 국정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적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보편적 인권론을 부정하는 아시아 개발국가 지도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여느 민간 인권운동가의 말로 착각할 정도다. 그는 당선 직후에도, 유엔인권위원회에 세계 지도자 5인의 한 사람으로 영상 메시지를 발표할 때(4월)도, 미국의 국제인권옹호연맹이라는 한 단체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할 때(6월)도 위와 같이 발언했다. 매우 수준높은 인권에 대한 발언, 특히 '경제건설'을 이유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것'은 '권위주의체제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이제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역사적인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했다는 '국민의 정부'의 인권성적표는 대통령의 말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끈 정부가 실천한 인권개선의 허와 실을 살피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인권문제의 개선이 이뤄졌는가를 점검함으로 드러날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조건"이다. 인권상황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요구"된다. 즉, 사회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모든 범주의 인권들이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가는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 1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IMF 구제금융 이후로 악화된 사회권에 대해 비중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의 인권개혁의 과제들을 먼저 짚어본 뒤, 각 영역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인권운동 주체들의 대응을 정리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있게 인권의 '철학'을 피력해왔던 것과는 정반대로 지난 1년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은 진전보다는 답보, 어떤 분야에서는 후퇴마저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물론 궁정적인 측면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류 최고의 가치인 인권이 오히려 희생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 김대중 정부의 인권 과제

김대중 대통령은 '여야 정권교체'라는 홍분을 맛본 것도 잠시, '국가부도' 상황에서 당선 직후부터 실질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정부를 출범시켰다. IMF 구제금융체제가 시작된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하게 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한 처방은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이었고, 이는 1년간 사회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했다. 더욱이 자민련파의 공동정권이라는 조건은 자유권적 인권상황의 개선마저 어렵게 했다. 경제적 위기에 몰리고, 권력 기반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준비된 대통령의 정부는 출발부터가 불안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의 인권상황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인권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인 요인을 멀리 악도하는 경제위기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강요는(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국내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모순의 격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서준식,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98. 5. 29.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하지만, 당초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았다. 그가 경제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줄 것으로 믿었고, 그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봉자로 비쳐져왔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는 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였고, 그런 만큼 때가 되면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진일보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진보진영 내에서도 있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는 무엇이었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98년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권 관련 개혁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서 민변은 새정부의 인권정책 과제로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국민적 동질성과 국민적 화해를 위한 작업(과거청산)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사상·양심과 표현의 자유 확대 ▲사회경제적 권리의 확대 ▲남녀평등 실현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질서 마련에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보안법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국가보안법의 임기 내 폐지를 제안했다. 민변의 이런 제안에는 김대중 정부가 행할 주요 인권정책의 과제가 망라되어 있고,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었다. 그만큼 김대중 정부의 짐은 많은 것이었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제를 이어받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인권의 개선을 위한 일을 너무도 게을리한 탓이기도 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인권과제는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놓게 만든 법률과 제도의 정비, 인권침해 기구들의 민주적 개편과 인적 청산 작업을 통한 인권보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자유권과 사회권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며,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대선 당시 선거공약을 보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상당히 반영한 대목들이 눈에 띈다. 인권공약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15대 대통령 선거공약집 '사법제도를 개혁하며,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는 장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준수,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법관·검사 정원 및 변호사 수의 대폭 증원, 비합리적인 법조관행의 개선,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성화 등 법률서

비스의 확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미결구금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등 행정제도의 개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민대화 합 차원에서 대사면 실시 ▲국가보안법은 존속시키되, 인권침해 방지 운영, 보완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하더라도 인권침해는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매우 획기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권 관련 발언들과 의욕적인 인권개선 공약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거의 대통령의 '립 서비스'와 문서로만 남는 꼴이 됐다.

이제 김대중 정부 1년의 인권 성적표를 주요 사안별로 살펴본다.

3. 김대중 정부 1년의 주요 인권 성적

① 과거 청산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등 광주학살범죄자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 학살범죄자들은 97년 성탄절 특사 때 당당하게 감옥 문을 나섰다. 대법원 형 확정 판결 8개월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광주학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가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련과 손을 잡을 때부터 과거청산 중 인적 청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노 석방으로 현실화된 것이었다.

큰 기대를 모았던 3월 13일 새정부 출범 기념 특사는 양심수 478명 중 74명만을 석방하는데 그쳤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체 양심수의 18%인 144명을 석방했던 것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었다. 특히나 28년 이상 수감된 23명의 비전향 초장기수 중 암투병 중이던 신인영씨 등 단 6명만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41년째 구금되어 세계최장기수로 지목받았던 우용각씨 등 17명은 석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 석방된 양심수의 대부분은 잔형기간이 만 2년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석방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더욱이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면에서 제외된 사람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국가체제 전복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며, 과거 정권의 공안세력과 동일한 인식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같은 인식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특사에서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드러났다. 7월 1일 법무부장관은 8·15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법서약을 통해 석방된 공안수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신공안정책'을 발표했다. 결국 8·15 특사는 준법서약을 기준으로 455명의 양심수 중 94명만을 선별 석방한 반면, 5·18, 12·12 사건의 현정파괴범들과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전원 복권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또 비리정치인들과 현정파괴범들에게

(24件中 11)
는 모든 공민권을 회복시켜준 반면, 풀려난 양심수들에게는 모두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죽음을 채운 것이 8·15 특사의 본질이었다.

김정권의 과거청산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안은 민족민주열사와 의문사 문제의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김 대통령은 10월 유가협의 대표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면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숨져갔던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폭압기구에 의해 저질러졌던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안은 나름대로는 김정권의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침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진전이 있었지만, 이 법안은 여야의 정쟁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 해를 넘기고 말았다.

제주 4·3 항쟁 5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들은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해 활발한 재조명 작업을 전개했다. 집권당 차원에서도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이상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48년 여순 사건 희생자의 유골이 여수지역의 한 시민단체에 의해 발굴되면서 여순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계기도 훌려보내고 말았다. 과거 '레드 콤플렉스'에 근거해 자행됐던 대규모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어떤 노력도 경주하지 않은 것이다. 해방정국이나 전쟁시기 때의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만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일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법원에서는 고문경관 이근안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 중지가 결정되는 일이 있었지만, 과거청산 문제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지 못한 채 하나둘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렇듯 지지부진한 과거청산 움직임 속에 12월 8일, 80년대 경희대 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이유로 수 차례 고문을 당했던 이길상 씨가 자살로 자신의 고통스런 삶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치유되지 못한 과거는 다시 현재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② 국가보안법의 문제

민가협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679명 가운데 98년 12월 23일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37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양심수 679명의 55%가 국가보안법 구속자였던 것이다.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8개월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10명으로, 동일 기간 김영삼 정부 때의 구속자 67명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남용을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국가보안법을 마구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구속자 가운데 164명이 한총련 대학생이라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혁직 민선단체장인 울산동구청장을 포함해 사회운동가 15명을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로 구속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3년 이상 불법도청과 몰래 카메라가 동원되는 등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사건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컨대, 김대중 정부 1년은 과거 어

느 정권 때보다도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양심수 구속현황 (98. 12. 23. 현재 민가협 조사)

* 월별 분류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구속자	1	13	31	84	91	111	123	90	58	38	39	679
국보법	1	7	18	53	55	72	57	27	33	17	34	374

* 적용법 규별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노동관계
374 (55%)	18 (2.6%)	201 (29.6%)	191 (28.1%)

김대중 대통령은 월간 <말> 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그런 것을 바라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말은 여론을 호도하거나 아니면 여론에 무지함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98년 11월 22일 한겨레신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진행한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동 여론조사(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는 20살 이상 성인 남녀 700명 가운데 절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개정완화	현행유지	강화	기타/잘 모름
일반국민	7.7%	70.5%	11.6%	7.3%	2.9%
변호사	27.5%	65.4%	4.6%	0.7%	2.0%
법학 교수	29.0%	70.0%			1.0%

응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가보안법이 악용·남용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국민=40.9%, 변호사=52.9%, 교수=63.0%)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일반국민	26.4%	55.8%	17.8%
변호사	27.5%	69.2%	3.3%
법학 교수	18.0%	77.0%	5.0%

이처럼 국민 여론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남북 대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과거 정부와 같은 수위의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법개정 또는 '대체입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법무부 업적'을 보고하면서 박 장관은 "현 국가보안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입법을 추진해야겠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법무부 인권과는 "아직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장관의 발언을 바로 뒤집어 국가보안법 개정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 나섰다.

이같은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을 한국의 인권신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하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2월 24일의 기자회견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한국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 앰네스티는 9월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의 방한 때와 12월 1일 국가보안법 50주년을 맞아 보낸 서한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다.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남용되고 있고, 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겨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충분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12월 24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되었다. 89년 재미한청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귀국 후 체포되었던 박태훈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가입)로 구속한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박 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안보가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가운데 구속하여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와 더불어 박 씨에게 구제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99년 1월 '이미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정받지 않는 한 어떤 배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사실상 유엔의 결정을 거부하고 말았다.

정부 못지 않게 국가보안법 남용의 책임이 있는 곳은 법원이었다. 법원은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추인하기에 급급했다. 다만,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동아대 간첩단 사건, 경인총련 노래페 천리마사건, PC통신 관련 윤석진 사건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 내에도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음을 보여줬다.

어쨌건 국제사회의 압력은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손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의 저항

"한국의 새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써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촌 도처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6월 7일, 미국 국제인권옹호연맹 인권상 수상 연설 중

새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였고 김대중 정부 인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국가인권위

원회 설치 문제는 98년 6월 미국으로 날아간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민간단체들이 줄곧 요청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문제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현실 가능한 실체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 시안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는 국내외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다시 법무부는 11월 25일 수정 인권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여 ▲불법감금이나 고문과 같은 8가지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사 ▲인권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인권위원회에 강제조사권과 구제명령을 부여하지 않음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31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국가인권기구 공추위)와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수정안에서 국가인권기구를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하려는 것은 곧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주된 비판 내용이었다. 이런 비판에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관계자들도 가세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공추위는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 설치 △법무부의 개입 차단 △충분한 조사권의 부여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 보장 △예산의 독립성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도 이런 민간단체측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한 안을 내놓았다. 민간단체측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그후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새정치국민회의 간의 대립과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후 12월 9일 대통령의 마지막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정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 역시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같은 일련의 논란과정은 법무부로 대표되는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로 인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감시를 받게 되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검찰로서는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와 준법서약제 도입을 통한 사상통제 유지 등 줄곧 인권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이렇게 청산되지 못한 정치검찰의 문제는 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통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권 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껏 치장하려던 김대중 대통령의 야심은 결국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검찰의 저항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④ 사상·양심, 표현의 자유의 억압

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준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 비민주적 권력일수록 억압적인 법제를 통해서 획일화된 견해를 갖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권력의 의지에 반하는 의견의 형성과 표현 자체를 범죄시하며, 인간의 내심조차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사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인 한계 안에 놓이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그 법률로서만 완결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각종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들과 제도, 억압기구의 존립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초현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상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와 법률이다. 이들의 반인권성에 대한 지적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는 이러한 제도와 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그의 입장은 급선회하였다.

현 정부 들어서 사상전향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7월 1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상전향제도의 철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단 정부가 사상전향제도의 존재와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한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는 사실상 사상전향제도의 변종일 뿐이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준법서약을 집단살인, 내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종죄인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고 ‘사상범’에게만 강요한다는 불균형성은 차치하고라도, 양심수들의 내심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 자체는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85년)으로 13년째 구금중 이던 강용주 씨는 외부로 전한 편지를 통해 “권력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서약서와 타협할 수 없다”며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멋진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양심수들에게 과거 비전향 양심수들과 마찬가지의 처우가 뒤따른 것은 사상전향제도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준법서약을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들은 계속 다른 재소자와는 분리된 채 수용되고, 작업 등에서도 배제되었다. 특히 준법서약은 가석방 등의 기준이 됨으로써 사상전향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준법서약은 오히려 사문화되어 가던 전향서에 구체적인 내용-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 장래 생활계획, 기타 하고 싶은 말-을 적시하도록 하고, 이전의 사상범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노동, 시국 관련 수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요구됨으로써 과거의 전향제보다도 개악된 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사상전향제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안관찰처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97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보안관찰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고 난 뒤, 그리고 이른바 신공안정책에 따라 출소 사상범에 대한 엄격한 보안관찰 적용 방침이 발표되고 난 뒤부터 보안관

찰은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말 김삼석, 이혜정 씨 등의 긴급체포에서 보여지듯,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한 보안관찰 대상자들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당국은 이들에게 신고를 강요하거나 사법처리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만기출소한 이들이든, 준법서약을 하고 출소한 이들이든 똑같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고 이를 2년 단위로 갱신하는 보안관찰법이 더욱 확대,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견고한 ‘절대주의 국가의 외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 속에서 적에 대한 무한대의 국가감시와 개입을 통한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굳건한 성벽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법원에서는 98년 6월 사노맹 출신 장민성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벌의 우려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11월에는 고원(사노맹 사건) 씨에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97년 1월 박석삼 씨에 대해 최초로 보안관찰 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그나마 희망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보안관찰법의 유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법·제도와 함께, 신고제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개입과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의 신문·서신 검열과 청원권 폭살, 영화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열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영화의 등급심사제,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폭살, 컴퓨터 통신상의 표현 문제에 대한 공안기관의 개입에 따른 구속 등은 과거 정권보다 나아진 게 없는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거기에 근거해 의사를 형성하며, 이를 자유로이 표현할 길이 원천 봉쇄된 사회는 본질적으로 절대주의 국가일 것이다.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절대주의 국가적 반인권의 시스템은 다음 절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⑤ 거대 감시·억압체제의 존속

독재권력에 의해 오랜 세월 정형화된 국민들에 대한 거대 감시·억압체제도 현 정권에 들어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조차 이들 거대 감시·억압체제가 존속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감시와 억압체제의 실체는 불심검문, 도감청, 사찰, 종기남용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불심검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근거해 집행되는 불심검문은 과거부터 불법적인 관행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조용환 변호사는 불심검문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가가 언제든지 자신을 검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절대성에 굴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력감 속에서 내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폭력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그럴 때마다 경찰측은 ‘친절검문’이니 ‘적법절차의 준수에 따른 검문 요청’이니 하면서 적당히 비판을 피해 나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4월부터 불심검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경

찰은 형식적인 지시나 공문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선 경찰과 전경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분석에 따른 시정조치 ▲불심검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경찰이 그나마 변화의 태도를 보인 것은 인권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 법원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불심검문 관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일선 경찰서에 불심검문 할당량을 정해 내리는 것은 여전하고, 수배자 일제검거 기간 등을 통해 무작위 불심검문 관행을 은존시키고 있다. 더욱이 불심검문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다음으로 98년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수사기관들의 도감청 문제를 들 수 있다. 올해 2월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부와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전화감청 건수는 6,638건으로 97년 6,002건보다 10.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감청은 전체의 15.6%인 1,038건에 이르렀다. 반면에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은 1.5%에 그치고 말았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3,956건, 검찰 1,476건, 안기부(현 국정원) 802건, 군 330건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화감청은 긴급감청을 비롯해 수사기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밝히기 어려운 불법 도청의 문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화회선과 가장 앞선 장비를 보유한 안기부가 한 해 802건의 감청을 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거대한 도청을 통해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는다.

우편검열의 경우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 8월까지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등이 모두 567건의 45,560통의 우편물 검열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단 한 건도 기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정치사찰의 문제다. 경찰의 존안카드는 정치인, 기업인, 재야 운동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존안카드의 존재는 지난 90년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98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뒤에 드러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대법원은 보안사에 의해 사찰을 당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1백50여명 중 80명에게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96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전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경찰의 존안카드는 안기부의 보안감사에서 지어져 있었고, 그 후 경찰이 양식까지 만들어서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가 실제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처음에는 존안카드 작성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여론의 질타를 받고, 존안카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사찰 문제는 여전히 의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12월 말 국회 529호 사건은 이런 깊은 의구심 끝에 터진 것으로 안기부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한

채 정치사찰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넷째, 총기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사상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경찰의 총기 남용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총기에 의한 범죄가 거의 찾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 속에서 경찰이 총기로 인명까지 살상하는 일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기사용 건수는 279건으로 9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기사용 건수인 295건에 거의 육박했다. 특히 신창원 씨의 검거 실패 이후 '공포탄 2발을 발사한 뒤 실탄 3발을 발사'하도록 돼 있던 총기사용수칙을 '공포탄 1발을 쏜 후 바로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난 8월 한 달 동안에 무려 51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총기사용 경찰의 8할이 20대의 젊은 경관인 것으로 밝혀지고, 총기 사용에 의한 사망사건의 경우 '대퇴부 아래 조준사격'이라는 규정에 어긋나게 피해자의 등 뒤에 발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검거를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총기난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런 경찰의 총기남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총기를 남용한 경찰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우리의 교도행정은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없는 자에게는 더없이 역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98년 한 해 동안 교도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인권단체들의 교도소 실태조사작업, 교도소내의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 조세형 씨 등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의 증언 등이 잇따랐지만, 법무부는 시종일관 원론적인 답변만을 거듭했다. 단지, 교도소를 인권단체들에게 형식적으로 개방한다든지, 모범수에 대한 제한적인 전화와 집단 가족 접견 등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조처는 있었지만, 아직도 교도소는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한편, 또 하나의 감시억압제도인 주민등록제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제의 시행 계획이 폐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온 국민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목요연하게 예비 범죄자로 감시받게 될 것이며, 불심검문과 사찰 등의 인권유린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우리 사회가 걸어야 할 인권보장의 제도화는 참으로 멀고도 힘하다는 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 역시 과거 정권과 다름없이 국민에 대한 감시와 역압체계에 의존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다.

⑥ 벼랑 끝 생존권, 강제되는 배제의 구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의 회생은 불가피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98년 한 해 사회권 악화의 전주곡이었다. 97년 IMF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을 수용한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로 대표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을 그 회생양으로 삼았다. 그 결과 김 대통령의 말대로 20%가 생존권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후

퇴현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우선 정리해고의 시행과 함께 고성장에 따른 종신고용 체제는 무너지고, 저성장-고실업의 구조가 정착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실업률은 이미 98년 3/4분기에 7.4%에 달하고 99년 1/4분기에는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업의 공포는 전사회를 휩쓸고 있다. 정부의 통계가 주당 단 1시간만이라도 일하는 경우는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인 실망실업자의 경우도 실업자 집계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우리 사회의 실업자는 민주노총이 98년 8월 집계한 4백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분기별 실업률 전망

(단위: 만명, %)

	97년		98년				99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2,181	2,163	2,089	2,166	2,157	2,160	2,124	2,199	2,185	2,186
증가율	1.5	0.6	-1.0	-0.9	-1.1	-0.1	1.6	1.5	1.3	1.2
취업자수	2,134	2,107	1,971	2,018	1,997	1,998	1,945	2,030	2,026	2,026
증가율	1.2	0.0	-3.7	-5.4	-6.4	-5.2	-1.3	0.6	1.4	1.4
실업자수	47	56	118	149	160	162	179	167	159	161
실업률	2.2	2.6	5.7	6.9	7.4	7.5	8.4	7.7	7.3	7.4

자료: 노동연구원, '실업전망 및 99년 실업대책(98.12.10)'

주: 98년 3/4분기까지는 실적치이고 98년 4/4분기 이후는 전망치임.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곧바로 취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악화로도 이어졌다. 이미 98년 상반기 중에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4.3달러 수준으로 하락해 일본의 14.7달러, 미국의 13.4달러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게 됐고, 대만의 6.1달러보다도 2달러 정도 낮은 수준이 됐다. 1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으며, 90%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이 삭감되었고, 체불임금도 1조원에 달하는 속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며 겨자 먹기로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소득분배 구조도 갈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참조>. 지난해 상반기 소득 분포에서 1분위(최하위 소득층)에서 4분위까지의 80%에 달하는 국민들의 소득이 14.9%에서 5.5%까지 하락한 반면, 5분위(최상위 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반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누진세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조세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도시 근로자 3천6백 가구 소득 조사'에 의하면 1/4분기 5분위 세금납부액 증가율은 3.6%였다. 반면, 나머지 4개 분위 계층들은 11.7-17.6%를 나타냈다. 이어 2/4분기 나머지 4분위 분류 계층의 세금 납부액은 17.2-25.3% 증가하였으나 소득이 증가한 상위 1분위 계층의 세금 납부액은 오히려 1.8%가 줄어들었다. 결국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불균형이 갈수

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등을 이유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를 완화시켰고, 도리어 간접세 비율을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 실업보험의 확대, 국민연금의 확대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고 있지만,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권리로부터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 가계지출 증감률

(단위: %)

	98년 2/4분기		98년 3/4분기	
	가구소득	가계지출	가구소득	가계지출
평균	-4.0	-8.8	-14.4	-13.9
I	-14.9	-9.0	-24.4	-13.4
II	-8.8	-8.6	-19.6	-17.7
III	-6.9	-8.2	-18.3	-16.2
IV	-5.5	-7.1	-15.2	-13.4
V	2.3	-10.4	-8.0	-11.3

자료: 통계청, '1998년 2/4분기, 3/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 동향'

배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처럼 노동권,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는 가운데 98년 들어 노숙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IMF형 자살자와 이혼율의 급증 등 생명권과 가정의 파괴 현상도 두드려졌다. IMF형 범죄 또한 급증했다. 채무 변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폭력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 자신의 발목을 자른 슈퍼마켓 주인 자작극 등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반면에 IMF 구제금융을 초래한 장본인인 5대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층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만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일부 재벌들은 자본의 집중과 독과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혜택까지 쟁기게 되었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 경제회복을 위해서 각종 규제의 해제와 세제의 변화, 금리소득 등을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까지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위에서 98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는 소수를 위한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 배제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됐을 뿐이다.

한편, 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면서, 이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마저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임금삭감, 임금체불이 강요되고,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와 노동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는 5백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 또는 수배하였고, 아남 산업이나 만도기계 등에 경찰력을 투입해 합법적인 파업권마저 유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도 허용하지 않았다. 노숙자 대해서도 불순세력의 결합에 의한 사회불안요인으로 보는 공안적 시각이 계속 유지되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파업을 "국가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행위"

로 매도했으며, 주동자들은 반국가사범으로 업종처벌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위협이 공공연히 발표되곤 했다.

결국 현 정부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뒤엎은 채 기득권 세력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허용치 않는 독재권력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것이지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이미 80%가 완전실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정리해고의 0순위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정리해고 시킨 뒤 기업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기혼 여성의 경우는 더욱더 직장에 발붙이기 힘들게 되었다.

서울 도원동 강제철거를 비롯해 수원 권선구, 의왕시 오전동 등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철거민들은 계속 구속과 부상의 위험 속에서 노출된 반면, 폭력을 휘두른 철거용역깡패들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불평등한 상황이 이어졌다.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경영 방침에서 드러나듯, 구조조정의 칼날은 기본적인 국민의료체계마저도 파괴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지마을, 뿌렌나 애육원, 구생원(이상 충남), 전주의 동암재활원 사건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지만, 정부당국은 뿌리깊은 비리와 인권유린의 구조를 파헤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노숙자에 대한 강제적인 '희망의 집' 입소 과정이나 노숙 전면 금지 방침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통제와 압박을 통한 격리정책이 이전의 정권처럼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회권의 악화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겪지 못한 문제들이다. 물론 이 말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IMF 이전이나 그 후에나 사회권 자체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해 왔으며, 단지 국가에 의한 시혜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이다. 이 점을 전제한 속에서 IMF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권의 후퇴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사회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이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는 비단 인권운동만의 뜻이 아니라 사회의 개혁, 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 모두의 뜻이다. 이제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권 운동은 우리 앞에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4.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이 글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행한 인권개선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다양한 문제들 모두를 언급하려 하지도 않았다. 김대중 정부 1년의 인권상황을 읽을 수 있는 주요 흐름들을 몇 가지 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같은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서도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김대중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 기구들을 개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반인권적인 도구들을 활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들의 개폐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경찰 기구도 민주적으로 개혁하지 않았고, 불심검문과 같은 불법관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권을 앞세우는 현 정부도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왔던 수단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현 정권은 약간의 민주적 외양을 통해 독재적인 본질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적 본질, 권위주의적 모습, 파쇼성은 이후 실업 등에 반발하는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진다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형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요청되는 것이다.

둘째, 본질적으로 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화사한 '인권' 담론을 꺼내들고 있지만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결과하는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후퇴'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사회권의 후퇴 현상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가난한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해고와 실업, 빈곤의 심화로 이어지는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현 정부는 구조조정의 필연성만을 강조할 뿐, 민중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를 박탈당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이나 실업자들의 조직화 움직임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듯, 현 정부엔 공안적인 관점만 존재할 뿐 사회권적인 관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국제금융자본과 재벌을 비롯한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의 김대중 정부하의 인권상황을 검토해 볼 때, 김대중 정부는 분명히 지배계급의 이해에 기반하면서 지배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인권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때문에 정리해고, 실업자 문제, 조세제도 등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권을 구체적인 권리개념으로 포착하고, 사회권의 확보를 위한 연대와 분발이 사회운동 세력의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셋째,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에서의 인권상황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 모습과 계급적 지배의 모습을 중첩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 자유권 분야에서 비합리적이거나 고국제적인 비난이 되는 몇 가지 분야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라든가, 감옥에서 일부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 점, 여성인권 분야에서 남녀차별 금지법의 제정 등에서 보이듯이 과거부터 인권침해의 주된 표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과 직접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의 개선은 진행시키게 된다. 하지만, 궁금적으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밀어부치면서 정권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다. 정리해고 철회 등 직접적으로 지배계급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다해도 기업과 자본가 계급의 이해는 철저히 보호하게 된다. 이런 양면적인 모습 중에서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사회권 분야에 대한 탄압이다. 결국 사회권의 탄압을 통한 정권의 유지를 자기 본질로 갖는 현 정권은 일면 양보의 측면을 갖는 자유권 분야에서 개선을 보이면서 두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주장은 무참히 억누르게 될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파쇼정부화될 가능성이 높후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합의' 구조는 이런 정권의

본질을 은폐하게 될 것이다. 가령 헛별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불만을 회석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민화협, 제2전국위원회와 같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포섭구조를 통해서 민간단체들을 적극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만, 늘 결정권은 정부에서 될 것이다. 반관반민의 사회적 합의틀을 통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고, 대중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의사(疑似) NGO 정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들 반관반민의 사회적 합의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배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식 인권의 길은 인권이라는 기만수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배제시켜 가는 전략이다. 자유권 분야에서의 일부 인권개선도 사회적 약자들의 회생 위에서 그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이뤄지면서 자칫 복잡한 인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 관점에서 인권을 수단화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인권을 인류 최고의 가치로 실현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 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 인권운동이 지금까지 협애한 사고틀에 묶여 관성적 방식의 인권운동에 연연한다면, 논의의 주도권만 아니라 상황 전개의 주도권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 인권의 대원칙인 보편성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때, 인권운동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한 채 주변화되고 왜소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구조,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들에 보다 근본적인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⑥ 민간인권운동이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자본주의 구조에서 비롯되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되는 민중의 고통에 눈을 돌려야 하며, 고통 받는 대중들에게 인권운동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 결과되는 불평등과 부자유의 상태에 대해 인권의 가치로 본질적 문제 제기를 해 들어가야 한다. 전통적인 보수적 인권관을 넘어서 진보적 인권관, 급진적 인권관의 형성을 통해서 인권논의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체제와 사회구조의 회생양인 고통받는 대중들의 '벗'으로 인권운동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⑦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인권운동의 주제를 새로이 설정하고, 그 주제들에 맞는 노동, 여성, 환경, 사회적 약자들과의 구체적인 연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인권운동이 분열화되어 있는 사회운동을 새로이 엮어내고, 통합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인권운동은 '주변화 축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임무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인권운동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대원칙에 입각해 이 저항운동에 연대하는 것이 새로운 천년을 맞는 역사적 소명일 것이라 믿는다.

(1999. 2. 18.)

인권하루소식

98년 7월

(제1157호 - 제1178호)